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[도일용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172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9. 6.

발의의원 : 도일용 의원, 김보경 의원

1. 제안이유

- 가. 現 조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성군에
되어 있는 학생이라도 교복을 입는 달성군 관외지역 소재학교에
다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.
- 나.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성군에
되어 있는 학생이면, 다니는 학교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모두 교복
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을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교복을
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에서 학교의 소재지
와 관계없이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으로 변경(안 제3조)
- 나.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만 제출토록 한 것을
해당 학교의 장 및 관할 읍·면장에게 제출토록 변경(안 제5조)
- 다. 교복구입비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토록 한 것을 해당 학교의
장 및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토록 변경(안 제5조)
- 라. 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
신설·추가(안 제5조)
- 마. 조례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(부칙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” 를 “교복을 입는 학교에” 로 한다.

제5조 1항 중 “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” 를 “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장(이하 “관할 읍·면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” 로 하고,

같은 조 제2항 중 “학교의 장은” 을 “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·면장은” 으로 하며,

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같은 조 제3항 중 “교복구입비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.” 를 “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” 로 한다.

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.”

부칙 중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 를 “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” 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대상)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정한 기준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으로 한다.	제3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으로 한다.</u>
제5조(지원절차)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5조(지원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장(이하 “관할 읍·면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
② <u>학교의 장</u> 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서를 작성하고, 해당 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<u>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·면장</u> 은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<u>교복구입비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.</u> <u><신 설></u> 부 칙 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	③ ----- ----- ----- <u>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.</u> ④ <u>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.</u> 부 칙 <u>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

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					
☐ 신청학생 인적사항					
성 명		생년월일		성별	남, 여
주 소					
☐ 신청인(학생 또는 학부모) 인적사항					
성 명		연락처		학생과의 관 계	
☐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(해당란에 “○” 표시)					
지원여부	지원받음 (), 지원받지 않음 ()		지원받은 금 액	원	
「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	
년월일					
신청인(학생 또는 학부모) : (서명 또는 인)					
학교장 또는 읍·면장 귀하					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		①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: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② 수집·이용·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• 학 생 - 성명, 생년월일, 학교, 주소(전입일자 포함)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: 학교 등 교육기관 ※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. ▶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(☐예, ☐아니오)			

[별지 제2호서식]

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

(○○ 중.고등학교 또는 ○○ 읍.면)

[illegible]

작성자 : ○○ 중·고등학교 또는 ○○ 읍·면 ○○○ (인)

확인자 : ○○ 중·고등학교장 또는 ○○ 읍면장 ○○○ (인)

달성군수 귀하

발 의 자 서 명 부

의 원 명	서 명	날 인
도 일 용	조 실 용	
김 보 경	김 보 경	

